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6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4,058,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38,95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2. 주식회사 B(2015. 1. 13. 변경등기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고, 2017. 7. 13. 다시 '주식회사 D'로 변경등기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00주(50%)를, E이 나머지 5,000주(5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11. 21. 유상증자로 신주발행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0주(이하 '유상증자 신주'라 한다)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6. 11. 21.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95.45%(= 105,000주/110,000주)를 소유함에 따라 최초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7. 12. 7.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유상증자 신주 취득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5,413,545,723원에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5,167,229,393원(= 5,413,545,723원 × 95.4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058,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38,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1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1. 12.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때부터 이미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과점주주였다.

따라서 원고가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받아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확인서 등은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E 사이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받음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2)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 과정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이 E의 명의로 인수된 2015. 1. 12.부터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 12. 이 사건 법인의 기존 주주인 F, G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갑 제5호증, 중개인의 기재가 없고 양수인의 인적사항만 수기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에 양수인은 원고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F, G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100%)과 경영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가 적성되었다. E이 이 사건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라면 원고 혼자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전부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 계약서 등의 작성을 묵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같이 설립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을 2,000만 원에 인수하기 위해 부동산매입법인과 접촉한 사실이 기재된 2015. 1. 2.자 이메일(갑 제4호증)이 존재하고, 2015. 1. 6. 및 2015. 1. 12. 이 사건 법인의 양수대금 2,000만 원을 원고가 단독으로 송금한 내역(갑 제7호증)과 이에 대한 중개확인서(갑 제8호증)도 확인된다. 반면 E이 이 사건 법인 또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과정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와 E 사이에 2015. 1. 12.자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00주를 E에게 명의신탁하되, 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주주총회 참석 · 투표권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약서(갑 제9호증)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상호가 2015. 1. 13. '주식회사 B'으로 변경등기되었음에도 그 전날 작성된 위 계약서에 이미 이 사건 법인의 상호가 위 변경된 상호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변경일자(2015. 1. 12.)와 그 등기일이 하루 차이에 불과한 점, 법인을 새로이 인수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인수 후 사용할 상호로 미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여성인 원고 혼자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신뢰할 만한 남성을 공동주주로 내세우는 것이 사업 초기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특별히 신빙성이 의심이 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H, I, J)만이 사내이사와 감사 등으로 등기되었을 뿐 E 또는 그의 가족은 임원으로 등기된 바 없다.

⑥ E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후인 2017. 8. 25.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 주주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이고, 본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7. 8. 31. 국세청에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2015년 귀속 증여세 3,721,5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갑 제11호증).

⑦ 한편 원고가 2016. 10. 11. 작성 · 제출한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을 제6호증)에 E이 2016. 10. 7.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위 신청서에 E 명의의 동의서(을 제6호증 18쪽)와 인수포기서(을 제6호증 19쪽)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의 위와 같은 작성행위 등은 원고와의 명의신탁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에 따른 형식적·부수적 행위일 뿐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2015. 1. 12.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한 2016. 11. 21.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유상증자 신주의 취득으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판사 추진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